

〈상조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 일시 : 2024. 2. 28.(수) 10:00~12:00
-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12호 최고위과정실

〈프로그램(안)〉

10:00~10:10	개회사 및 기념촬영
10:10~10:30	[제1발표]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총칙의 주요 내용 사회 : 김상중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 : 정신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10:30~10:50	[제2발표]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각칙의 주요 내용 사회 : 김상중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 : 김세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10:50~12:00	[종합토론] 사회 : 이병준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 김성환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정민중 사무관 (기획재정부 서비스정책과) 박미영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오일록 회장 (위드라이프그룹)
12:00	폐회

2024.2.28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총칙의 주요 내용

정신동(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jungrecht@hufs.ac.kr)

목차

- I. 입법 추진 배경
- II. 상조산업 진흥법(안)의 목적
- III. 상조산업 진흥법(안)에서의 개념 정의
- IV. 상조산업 진흥법(안)의 적용

제1장 입법 추진 배경

■ 현황

- 상조서비스는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사망자 수 : ('20) 31만명 → ('30년) 41만명 → ('70년) 70만명)하고 있는 분야임
- 나아가, 친환경·디지털화 등 新서비스 창출이 활발한 유망 산업(예컨대 친환경 장례용품 산업 성장 가능성)
-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심 정책은 화장문화 정착(화장률 : ('11) 71% → ('18) 86.8% → ('21) 90.8%) 등에 있었고, 이제는 장례·장사문화 변화에 맞는 서비스 다양화 및 新산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3

제1장 입법 추진 배경

■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 체계 개편 필요성

- 상조서비스 산업 분야가 신유망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요에 맞춘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
- 상조산업은 전문 장례서비스 수요 확대로 빠르게 성장중(가입자/선수금 : ('12) 351만명/2.5조 → ('18) 516만명/4.8조 → ('23) 827만명/8.4조)이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로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
-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할부거래법」의 규제 대상으로 등록제·선수금 보전제(자본금 15억원 이상만 등록 가능, 선수금의 50% 금융기관 예치 등 의무화) 등 적용 중
- 이에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소위 '진흥법'이 필요

4

제1장 입법 추진 배경

▪ 주요 추진 내용

- 상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 장례식장의 그린화, 디지털화(온라인 추모, AI·VR 등과 결합한 新장례서비스), 산분수목장, 해양장 등 장사방식의 선진화 및 다양화를 반영
- 상조산업 분야 재정지원
-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의 인증
- 상조관리사 자격 운영
- 상조서비스업자 관리를 위한 단순 신고제
- 상조서비스 이용자보호지침 및 표준약관 제정

5

제2장 상조산업 진흥법(안)의 목적

▪ 제1조: 목적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조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상조산업의 진흥을 통해 상조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례문화 발전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조산업 **진흥** 도모
- 상조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 장례문화 발전 -> 장례문화의 다양성, 친환경 및 디지털화

6

제3장 상조산업 진흥법(안)에서의 개념 정의

■ 제2조: 개념 정의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조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장례서비스

나. 매장·화장·자연장 등의 장사(葬事) 서비스

다. 장례서비스 또는 장사서비스와 관련된 부수적 서비스

- 상조(相助)란 본래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각종 의례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지만, 본 진흥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례·장사 관련 서비스로 사용
- 장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건전가정의례준칙상 상례)
- 장사: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상조 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상조서비스 자체는 상당히 폭 넓게 장사, 상례 및 기타 유관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

7

제3장 상조산업 진흥법(안)에서의 개념 정의

■ 제2조: 개념 정의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조서비스업자”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 방식에 의한 상조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조산업”이란 상조서비스 활동을 기반으로 또는 이와 연계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상조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상조서비스업자 개념: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상조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함
-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거래 방식을 선불식과 비선불식으로 구분함
- 상조산업: 상조서비스업자를 포함하여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체 산업을 의미
- 이용자 개념은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BtoB 거래를 열어둠

8

■ 제3~4조: 법 적용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조서비스에 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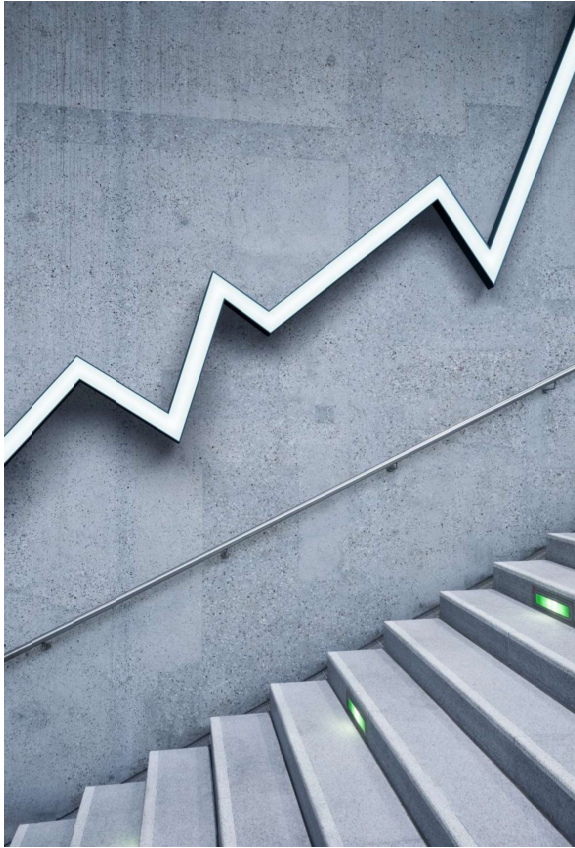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상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동 법안은 상조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를 특수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됨
- 동 법안은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대로 집행(예: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9

감사합니다

2024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각칙의 주요 내용

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목 차

-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II. 상조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보호
- III. 감독 및 시정조치
- IV. 벌칙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5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상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친환경 상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획일적 장례 및 장사 문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선진 장례 및 장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해설

- 2023. 11. 27. 자 관계부처 합동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장례·산후조리]”에 따르면 ‘장례서비스’에 관한 추진과제로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신규 장사제도 도입 및 트렌드 변화 대응을 통한 신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장사방식의 선진화·다양화를 위한 신규제도 마련, 친환경 장례서비스 산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함.

- 이와 같은 정부 정책추진방향을 반영함.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조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상조산업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상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장례문화와 친환경 상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상조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상조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조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상조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함 :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7조(상조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조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상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2. 상조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
3. 상조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4. 장례 및 장사 관련 시설의 건립 및 확충
5. 그 밖에 상조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조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상조관리사 자격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상조업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의 법률에서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함. 전문인력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활용 등에 의하여 상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에 그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상조관리사 자격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의 범주에 포함하며, 다만 그 자격의 취득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함.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9조(상조서비스선도기업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양한 장례·장사 서비스 제공 또는 친환경 상조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상조산

업을 선도하는 상조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상조서비스 선도기업으로 인증(이하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조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 인증제도를 통하여 상조서비스업자 간 자유롭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함.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10조(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조서비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9조의제7항에 따른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11조(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7항에 따른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12조(상조업협회의 설립) ① 상조서비스업자는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상조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⑦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 상조업협회 설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고, 설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그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음. 또한 협회의 설립(제12조) 및 업무(제13조)에 관해 각각 별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
 - 전문 인력 육성 등 관련 규정에서 협회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근거가 됨.

11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1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상조서비스 전문인력과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상조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의 주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며, 민간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업무 범위에 포함. 또한 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함.

12

I. 상조산업의 육성 등

- 제14조(재정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 상조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보호

- 제15조(상조서비스업자의 신고) ① 상조서비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신고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제2항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를 주무부처에 제공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상조서비스업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 상조서비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동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신고의무 면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중복적인 행정처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II. 상조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보호

• 제16조(상조관리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조관리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상조업협회가 시행하는 상조관리사의 민간자격시험 검정기준을 충족한 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자격으로서의 상조관리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해설

- 자격명칭으로 '상조관리사' 용어의 적절성 검토.

- 상조업협회가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을 상조관리사 자격의 취득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복수의 민간자격시험 사이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음.

- 한편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관리사 자격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II. 상조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보호

• 제17조(상조서비스에 관한 계약 체결) ① 상조서비스업자는 상조서비스에 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이용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 및 설명하여야 한다.

1. 상조서비스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상조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3. 상조서비스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상조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5. 계약의 해제·해지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6.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7. 상조서비스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상조서비스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거래에 관한 약관

9. 그 밖에 이용자의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이용자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조서비스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II. 상조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보호

- **제18조(상조서비스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표준약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조산업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 또는 개정 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이용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III. 감독 및 시정조치

- **제20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조서비스의 적정한 제공 및 상조산업의 육성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조서비스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1조(시정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 및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상조서비스업자가 그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V. 벌칙

• 제2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조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조서비스를 제공 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행한 자
5. 제20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1조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